

『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 세 진 의원 외 10인

2. 제안이유
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민의식 변화 등으로 화장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구미시종합장사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종합장사시설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(제5조)
- 추진위원회 운영과 회의비 등 제반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(제6조)
-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(제7조)

4. 참고사항
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매년 화장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임

○ 주요 내용은

- 종합장사시설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
- 최적의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 공모에 관한 사항, 그리고 추진위원회 회의와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원하고
-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임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국민의 화장문화 인식의 변화로 화장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 욕구를 충족시키고, 조속한 시일내에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